

부속서 18-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 부속기구의 기능

상품위원회

1. 제18.6조(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부속기구) 제1항가호에 따라 설치된 상품위원회의 기능은 그 밖의 모든 관련 부속기구의 업무 감독 및 조율과, 다음의 이행이나 운영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의 검토를 포함한다.

가. 제2장(상품 무역)

나. 제3장(원산지 규정)

다.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라.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마. 제6장(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그리고

바. 제7장(무역구제)

2. 제2장(상품 무역)에 대하여, 상품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제2장(상품 무역)의 이행 및 운영을 점검하고 검토하는 것

나. 이 협정상 관세 양허의 가속화 또는 개선에 대한 협의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시장접근 개선을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확인하고 권고하는 것

다. 제1항에 언급된 장들 중 하나와 관련된 다른 부속기구의 단독 권한에 속하는 기술적인 사안을 제외하고, 관세 및 비관세 조치에 대한 그러한 관련 사안을 포함하여 당사자들 간의 상품 무역에 대한 장벽을 다루는 것

라. 부속서 I(관세 양허표)의 양허표의 전환에 대한 지침 채택 및 전환된 관세 양허표와 연계표의 시의적절한 교환을 포함하여, 제2.14조(관세 양허표의 전환)에 합치하는, 부속서 I(관세 양허표)의 적용을 위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상품 분류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주기적인 개정에 따른 부속서 I(관세 양허표)의 각 당사자 양허표의 전환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마. 적절한 경우,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우수한 규제 관행과 우수한 규제 관행의 이용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을 포함하여, 제2장(상품 무역)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을 논의하는 것

3. 제3장(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상품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제3장(원산지 규정)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

나. 필요한 경우, 다음에 대하여 검토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에 적절한 권고를 하는 것

1) 제3장(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포함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운영 및 제3장(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협력의 증진, 그리고

2) 제3.34조(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변환)와 제3.35조(부속서의 개정)에 합치하는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와 부속서3-나(최소 정보 요건)에 대한 모든 잠재적인 개정, 그리고

다. 제3장(원산지 규정)제2절(원산지 운영 절차)의 적용대상이 되는 증명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른 지역 및 국제 무역 협정의 우수 관행을 고려하여 해당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표준화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협력을 촉진하고 조치를 확인하는 것

4.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에 대하여, 상품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

나.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의 해석과 적용을 포함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운영 및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과 관련한 협력의 증진에 대하여 검토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에 적절한 권고를 하는 것, 그리고

다. 제4.21조(이행 약정)에 규정된 이행 약정을 점검하는 것

5.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하여, 상품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

나.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사안이 관련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상호 관심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다. 제5.13조(협력 및 역량 강화)에 따라, 적절한 경우, 양자, 지역 또는 다자 작업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력을 촉진하는 것

6. 제6장(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하여, 상품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제6장(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

나. 제6.9조(협력)에 따라 협력을 촉진하는 것

다. 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호 합의된 우선 순위 분야를 확인하는 것

라.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사안이 관련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적합성 평가 결과와 기술규정의 동등성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상호 합의된 우선 순위 분야에서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

마. 작업 프로그램의 진전을 점검하는 것, 그리고

바. 제6.13조(이행 약정)에 따라 개발된 양자 또는 복수국간 약정을 감독하는 것

7. 제7장(무역구제)에 대하여, 상품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제7장(무역구제)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

나. 그 밖의 당사자들의 무역구제 법, 규정, 정책과 관행에 대한 당사자의 지식 및 이해를 증진하는 것

다.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당사자들의 당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라. 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는 것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

8. 제18.6조(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부속기구) 제1항나호에 따라 설치된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의 기능은 그 밖의 모든 관련 부속기구의 업무 감독 및 조율과 다음의 이행이나 운영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의 검토를 포함한다.

가. 제8장(서비스 무역)

나. 제9장(자연인의 일시 이동), 그리고

다. 제10장(투자)

9. 제8장(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제8장(서비스 무역)의 이행 및 운영을 점검하고 검토하는 것

나. 제8.12조(전환) 및 제8.13조(양허표의 수정)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다. 서비스 무역을 더욱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을 촉진하고 조치를 확인하는 것

10. 제10장(투자)에 대하여,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제10장(투자)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

나. 제10.18조(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수립된 작업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 그리고

다. 투자를 더욱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을 촉진하고 조치를 확인하는 것

11. 각 당사자는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에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새로운 조치 또는 정책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지속가능성장위원회

12. 제18.6조(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부속기구)제1항다호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성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의 이행이나 운영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제14장(중소기업), 그리고

나. 제15장(경제 및 기술 협력)

13. 제14장(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속가능성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제14장(중소기업)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 그리고

나. 당사자들 간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

14. 제15장(경제 및 기술 협력)에 대하여, 지속가능성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제15.5조(작업 프로그램) 및 그 이행 메커니즘에 따라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율하는 것

나. 각 활동에 대한 최종 완료 보고서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행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과 조율하는 것

다. 작업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 및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업 프로그램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라. 경제 및 기술 협력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조율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그 밖의 위원회를 포함하는 그 밖의 부속기구와 작업하는 것

기업환경위원회

15. 제18.6조(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부속기구)제1항라호에 따라 설치된 기업환경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의 이행이나 운영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제11장(지식재산)

나. 제12장(전자상거래)

다. 제13장(경쟁), 그리고

라. 제16장(정부조달)

16. 제11장(지식재산)에 대하여, 기업환경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제11장(지식재산)의 이행 및 운영을 점검하는 것

나. 당사자들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 그리고

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 규정, 제도 및 그 밖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17. 제12장(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기업환경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제12장(전자상거래)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

나. 제12.16조(전자상거래에 관한 대화)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당사자들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

18. 제13장(경쟁)에 대하여, 기업환경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제13장(경쟁)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

나. 다음에 규정된 경과조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13장(경쟁)의 이행과 제13장(경쟁)에 따른 당사자들의 경쟁 관련 진전사항 및 활동에 대하여 요구되는 대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1) 부속서 13-가[브루나이다루살람에 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2) 부속서 13-나[캄보디아에 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3) 부속서 13-다[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 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그리고

4) 부속서 13-라[미얀마에 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다. 경쟁 사안에 대한 당사자들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라. 제13.6조(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에 따른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 활동에 대한 당사자들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마. 제13장(경쟁)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포함하여 경쟁 사안에 대한 당사들 간 정보 교환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바. 모든 당사자들의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제13장(경쟁)을 검토하는 것

19. 제16장(정부조달)에 대하여, 기업환경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적절하고 합의된 경우, 제16.5조(협력)에 언급된 것과 같은 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나. 제16.6조(검토)에 따라 수행된 제16장(정부조달)에 대한 검토를 촉진하는 것